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의”를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로 하고, 같은조제4항제1호중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제1호중 “가격의 사정”을 “의 적정여부”로, 같은조제3항제2호중 “사정”을 “적정여부”로, 같은조제3항제3호중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장이 경영수의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제39조제1호 및 제3호”를 “제39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제4